

光州直轄市西區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措置命令未履行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4年 7月

社 會 產 業 委 員 會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 1994年 5月 25日

나. 提出者 : 光州直轄市 西區廳長

다. 回附日字 : 1994年 5月 26日

라. 上程日字 [1994年 7月 4日 第33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 (臨時會)
1994年 7月 4日 3次 社會產業委員會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清掃課長 姜宇鉉〉

가. 提案理由

-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資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環境을 보전하고
-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기타업종을 經營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실천권고시행을 이행 않을때에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절차를 定하고자함

나. 主要骨子

- 資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關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 (제1조)

-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이행등 조치 명령 불이행자에게 적용 (제2조)
-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함 (제3조)
-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제4조)
- 과태료의 처분은 과태료의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하고 납부기간이 경과시는 7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함 (제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음 (제6조)

다. 法的根據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 광주직할시 조례제정(안) 준칙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의 要旨

본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94년 4월 6일 광주직할시로부터 조례개정(안)준칙이 시달되었으며 동조례의 실시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흔히 쓸모없다고 버리기 쉬운 재활용품의 수집, 효율적으로 이용 자원을 절약하여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이크다고 사료되며 본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제2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조치명령"으로 또한 재활용의 이행등 "조치"를 "조치명령" 불이행자로 하고 부칙에 있어 "1994년 7월 1일"를 "공포한 날"로 원안의 수정을 가하여 의견함이 타당하다는 보고 요지였습니다.

4. 質疑 및 答辯의 要旨 : 생략

5. 討論要旨 : 없음

6. 修正案의 要旨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7. 4. 의회사회산업위원장

나. 수정이유

- 제2조(적용범위)에 있어서 단순한 조치라고 만하면 어떠한 조치를 불이행한 것인지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조치명령으로 명확하게 하고
- 부칙에 있어서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공포후 15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시행으로함

7. 審査結果 : 수정안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